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9. 17.(수)

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

-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수)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편의시설 설치 내용

-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깊이 1.3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
-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를 0.8미터 이하로 제한

<붙임> 1.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점검 개요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307)



□ 방문 개요

- (관련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22조
- (일시) '25. 9. 17.(수) 17:00~
- (장소) 케이티스포츠 (수원 케이티워즈파크)
- (방문목적)
 - 해당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석 운영실태 점검
 - 향후 운영계획 보고
- (참석자) 9명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담당자
 - (수원시)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담당자
 -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앙 센터 국장 및 부장, 경기 센터 과장, 경기 수원시 센터 부장
- (기타) 보도참고자료 배포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등의 이동·시설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규정
- 건축허가 행위가 있을 때 편의시설 설치 확인 절차 의무화(제9조의2)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지체장애인협회)가 대행하여 수행

□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공연장, 청사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통신시설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된 출입구(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점자블록 등

□ 이행 확보 수단 및 인센티브

-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 시정조치 요청(복지부 → 지자체), 시정명령(지자체 → 시설주), 이행강제금(지자체 → 시설주) 대상
- 편의시설을 설치한 건물을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 실태조사 및 설치율

- 매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5년마다 전수조사, 같은법 제11조)
- '23년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18년에 비해 9%p 증가